

『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4월 4일

나. 발 의 자 : 추은희, 김근한, 김영태, 김재우, 김정도, 박교상,
박세채, 신용하, 양진오, 이명희, 이상호, 이정희,
이지연, 장미경, 정지원, 허민근 의원(16명)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13일

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추 은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적용대상, 지원계획 수립, 실태조사, 지원사업(안 제4조~제7조)
-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(안 제8조)
-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등(안 제9조~제14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,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14조,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4. 5. ~ 4. 10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은
 - 상위법인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이 시행(21.11.19.)됨에 따라 지원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 -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필수업무 지정 및 실태조사,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 유지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